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홈페이지 게시용)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 요강(3년제)



동남보건대학교
DONGNAM HEALTH UNIVERSITY

I 주요 사항 안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재외국민(2%) 지원자격 표준화 기준 안내>

▶ 재외국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구분	주요 내용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 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외국체류 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부모(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학생 본인은 3/4이상 을 외국에 체류하여야 함.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구분	주요 내용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어능력 시험(TOPIK) 3급 이상인 자

I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학과)	주야	학제	모집인원(명)	
			재외국민	초·중·고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임상병리학과	주	3	3	모집인원 제한없음
식품영양학과	주	3	2	
물리치료과	주	3	3	
치기공과	주	3	3	
치위생과	주	3	3	
안경광학과	주	3	2	
의료융합광학과	주	3	2	
응급구조과	주	3	3	
뷰티케어과	주	3	2	
작업치료과	주	3	3	
계			26	

- 1) 입학원서 등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 세부 자격요건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선발 대상
 - 2) 타 전형과 복수지원 불가(모집시기별 1개 전형의 1개 학과만 지원 가능)
 - 3) 재외국민 총 26명 모집(총 입학정원의 2% 이내, 단,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 ※ 다만,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은 모집 인원
에 제한 없이 선발 가능

III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2.12.29.(목) 10:00~ 2023.01.12.(목) 16:00	• 원서 및 제출서류는 우리 대학 입학관리팀에 직접제출
제출서류 마감	2023.01.13.(금) 17:00까지	• 입학관리팀에 직접제출
합격자 발표	2023.02.06.(월) 14:00	• 합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 발표 및 개별 통보
합격자 등록	2023.02.07.(화)~02.09(목) 16:00	•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IV 지원자격

공통 사항

- ▶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예정)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가. 유형별

구분		학생 및 부모의 최소한의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학생		부모		
		재학기간	체류일수	해외근무자		배우자
				근무기간	체류일수	체류일수
① 재외국민 (2%)	해외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재외국민의 자녀)	중·고교 3년 (고교 1개년 필수)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역년으로 3년 (1,095일)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②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자))		초·중·고교 전과정(12년)	-	-	-	-

①의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학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①의 해외근무자의 범위 : 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

①의 중·고교(연속/비연속 무관) 3년* 은 2학기제 국가의 경우 6학기, 3학기제 국가의 경우 9학기를
뜻함

나. 세부 자격 인정기준

구분		인정기준
졸업자격 인정기준 (공통사항)		졸업자격 인정 기준시점 : 2023년 2월 28일 ※ 단, 고등학교 출신국의 학제 특성상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일본 등)
재외국민 (2%)	기본 사항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이때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본인은 3/4 이상. 부·모 모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부모의 근무국에서 자녀의 재학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거주(체류) 및 근무 - 아래 ②~④의 재학/근무/체류가 중첩되는 기간만 재외국민 지원자격 기간으로 산정 - 기타의 경우 본 모집요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판단함
	① 외국학교 인정기준	-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외국계)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나, 부모 근무국의 지역적, 종교적, 이념적(공산권)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3국 수학을 인정 ※ 단, 부모의 근무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하는 제3국 수학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에 의거 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중·고등학교 과정만 인정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등에서의 수학은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미인정
	② 해외재학 인정기준 (자녀)	- 학생의 재학기간 : 해외 근무 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외국 근무 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외국에 남아서 외국학교에 재학한 기간은 외국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1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③ 해외근무 인정기준 (해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 - 해외 근무/사업/영업 등의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만 해외 근무기간으로 인정 - 해외근무자 종류 : 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관련 증빙서류필)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④ 해외체류 인정기준 (해외 근무자, 배우자, 자녀)	- 부·모의 체류기간 : 자녀의 재학기간 및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 - 해외 체류기간 산정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 체류일수를 합한 기간 - 위 ②기준의 학생 해외재학기간의(방학기간을 포함한)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부모 : 2/3 이상 체류 필수, 학생 3/4 이상 체류 필수 -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 학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전과정 해외 이수자	동일학제 1개국내 전과정 해외 이수자	▶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다른학제 2개학교 이상에서 전과정 해외 이수자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table><tr><th>학년제</th><th>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th><th>비고</th></tr><tr><td>10학년 이하</td><td>미 인정</td><td rowspan="3">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td></tr><tr><td>11학년제</td><td rowspan="2">초·중고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tr><tr><td>12학년제</td></tr><tr><td>13학년 이상</td><td>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td></td></tr></table>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고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 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고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V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의사항

구분	해외근무자 자녀(2%)			해외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해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1. 입학 원서(우리대학 양식)	공동 제출서류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
3.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입학, 전입, 전출, 졸업일 등이 정확히 기재)	○	○	○	○
4.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한 모든 학교의 전학기 성적이 정확히 기재)	○	○	○	○
5. 가족관계 증명서(부모·학생)	○	○	○	
6. 재외국민 지원자격 종합기록표(우리대학 양식)	○	○	○	
7. 출입국사실 증명서(부모·학생)	○	○	○	○ (학생)
8. 사실증명 발급 신청 위임장(부모·학생)	○	○	○	○ (학생)
9. 여권 사본(부모·학생)	○	○	○	○ (학생)
10.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학생)	○	○	○	○ (학생)
11.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	○		
12.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13. 해외직접투자승인서 또는 해외지사 설치인증서	○ (상사주재원)			
14.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		○		
15.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 증명서			○	
16.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	○	
17. 기타 증빙서류 (*개명, 입양, 부모의 이혼, 12년미만학제 등)	필요시			
18. 외국어 자격증 원본(보유자)	○	○	○	

※ 서류제출 필독사항

가. 입학전형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본을 지참하여 우리 대학 입학관리팀 에서 원본대조필 후 사본 제출

나. 발급서류

- 국내발급서류 :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함
- 해외발급서류 : 모든 해외발급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외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는 공증받은 번역본(한국어)을 제출해야 함 (재외한국학교 발급서류 제외)

다. 해외근무자 자녀(2%)의 해외근무 관련 서류 (11~15)가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불가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해외 근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 (11~15의 서류에 한함)

라. 1, 6의 경우 우리대학 입학 홈페이지에 한글 작성 양식 별도 탑재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제출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국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 비협약국 :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 제출

VI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서류심사 100%
- 자격요건이 적격한 자에 한하여 선발

※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외국 장기 거주자 및 연소자 순으로 선발

2. 전형료

구분	전형료	비고
전형료	25,000원	원서 접수시 직접 납부

※ 원서접수 마감 이후 원서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전형료 반환

- 원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단,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을 반환함(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됨)
- 반환 전형료는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전형료 반환계좌로 받거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반환받을 수 있음. 단, 금융기관의 계좌로 반환 받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차감될 수 있으며, 이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타 안내사항

가. 전년도(2022학년도) 입학금 및 한 학기 수업료

계열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감축 대응지원장학금	등록금
사회실무	205,000원	2,982,500원	-204,600원	2,982,900원
보건	205,000원	3,273,000원	-204,600원	3,273,400원
간호	205,000원	3,348,000원	-204,600원	3,348,400원

※ 등록금 변동 시 변동된 등록금으로 적용됨

VII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재외국민 특별전형 내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학과)만 지원이 가능함
- 입학원서에 여권용(3.5cm×4.5cm) 사진파일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이미지 파일 가능)
- 입력사항 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전형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접수중 수령 후에는 입력 사항 변경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며,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음
- 문의: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031-249-6262)

2. 전형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 원서접수 완료(접수중 수령)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천재지변, 질병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음(전형료의 면제·감액·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함)
- 졸업예정자가 당해연도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는 입학을 취소함
- 두 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경우(등록한 모든 학교의 입학이 취소됨)
- 모집요강에 있는 금지조항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않음
-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남보건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함
- 원서접수 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031-249-6263)으로 통보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동남보건대학교는 신입생 모집 및 선발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별을 두지 않음.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수학이 불가능한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성 질병이 있는 자, 제3자의 지속적 도움이 필요한 자 등)는 수업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우리 대학 학생지원팀에 상담을 바라며, 학과 특성(현장 실습, 실험실습 등)에 따라 제한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1학년 1학기 중에는 군입대 및 질병휴학 이외에는 휴학을 허락하지 않으므로(학칙제28조(휴학)) 반드시 학사운영팀(031-249-6222~5)로 문의하기 바람
- 신입생 모집요강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 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을 짐
- 문의: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031-249-6262)

VIII 등록 및 환불 안내

1. 등록

- 2023.02.09.(목) 16:00까지 본교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로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2.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 안내

신청	동남보건대학교 입학관리팀에 방문하여 신청
기간	2023.02.10.(금) ~ 02.28(화) 15:00
반환방법	반환 신청 후 2일 이내 입금
반환근거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당일 입금액에 대하여 당일 반환이 불가하며, 입금 다음날 반환이 가능함(업무일 기준)
-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신청은 근무일 기준 10:00 ~ 16:00까지로 하되 마지막 날인 2023.02.28.(화)의 입학포기 및 등록금 반환은 15:00까지의 신청자에 한하여 2023.03.02.(목)까지 온라인 입금함
- 학기개시일부터의 등록금 반환신청자는 입학포기가 아닌 자퇴처리 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됨

3. 불합격 처리 및 입학허가 취소

구분	불합격 처리 및 입학허가 취소 기준
자격위반 및 부정행위	- 우리 대학에 복수로 지원한 자 - 지원자격에 미달된 자 - 제출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정정 또는 변조한 자 - 제출기한 내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자 - 학력 조회결과 지원자격 미달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입학(합격)을 취소함
대학입학 지원방법및 이중등록 위반	-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신입생 등록 및 복수지원 주의사항

1. 전문대학 지원방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지원방법

- 전문대학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

☐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간의 복수 지원 가능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가.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정시 및 추가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음
- 나.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정시 및 추가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음

2 신입생 등록

☐ 이중등록 금지

-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예치금 가 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 (※등록이라 함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함

☐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 정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 내 또는 대학별로 설정한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 정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해야 함.

3. 대입지원방법위반자에 대한 조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

☐ 복수지원위반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 전문대학 및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원(한국, 광주, 대구경북, 울산),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등 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양식1]

입학원서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험번호 (지원자 기재 금지)									
---------------------	--	--	--	--	--	--	--	--	--

지원자격 유형 (☑ 표시)	① 해외파견 재직자 자녀	☐
	② 현지 취업자 자녀	☐
	③ 현지 자영업자 자녀	☐
	④ 해외 초·중·고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지원학과	과
------	---

지원자	성명(한글)											성별(☑)	사진 (3.5cm × 4.5cm)	
	성명(영문)											남 ☐ 여 ☐		
	주민등록번호							-						
	출신고교													
	졸업(예정)일	년 월												
	체류국가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전화					기타연락처1		기타연락처2
	e-mail											@		
보호자	성명	부									모			
	외국 근무 사항													
	근무국	장소(도시명)				소속기관(지사)명				근무(거주)기간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3년 01월 00일

지원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전형료 납부확인

(인)

재외국민 지원자격 종합기록표

지원자 학교명 (초·중·고)	재학기간	우리나라 12학년제 기준 이수 학년 및 학기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또는▲																										
		학교 소재지(국가, 도시)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학기)								
	~																											
	~																											
	~																											
	~																											
	~																											
	~																											
	~																											
	~																											
	~																											
비고		※ 해당 학기를 온전하게 이수하였으면 ●, 그렇지 않다면 ▲ 표시 ※ 출신 학교 국가의 학제를 우리나라 12년 학제와 비교하여 정확히 작성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13학년의 경우 해당 없을 시 빈칸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초·중·고교 과정 총 13년 이수자만 필요)																										
지원자 재학관련 특이사항 기재 (중복학기, 월반, 학제차이 등)																												

해외근무처명 (회사명 등)	재학기간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상)	재직 시 우리나라 12학년제 기준의 학생의 해당 학년 및 학기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 또는 ▲																													
		근무지 소재지(국가, 도시) :													총 재직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근무지 소재지(국가, 도시) :													총 재직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근무지 소재지(국가, 도시) :													총 재직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근무지 소재지(국가, 도시) :													총 재직기간 : 년 개월(학기)																
	~	● 또는 ▲																													
		근무지 소재지(국가, 도시) :													총 재직기간 : 년 개월(학기)																
비고		※ 해당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해당학기 기간에 온전하게 재직하였으면 ●, 그렇지 않다면 ▲ 표시 ※ 재직기간의 경우 동일 국가에서 학생의 재학기간과 겹치는 기간만 인정																													
해외 근무자 재직관련 특이사항 기재																															

구분	체류기간 (체류시작 ~ 체류종료)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12학년제 기준 학생의 해당 학년 및 학기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해당국 체류일수	~	● 또는 ▲																																				
		체류지(국가, 도시) :																																				
해외근무자 해당국 체류일수	~	● 또는 ▲																																				
		체류지(국가, 도시) :																																				
해외근무자의 배우자 해당국 체류일수	~	● 또는 ▲																																				
		체류지(국가, 도시) :																																				
비고	※ 각각의 1개 학년마다 학생의 경우 3/4, 부모의 경우 2/3 이상을 온전하게 체류하였으면 ●, 그렇지 않다면 ▲ 표시 ※ 체류일수의 경우 해외 근무자의 해외 근무기간 및 지원 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과 일치하는 일수만 카운트 인정 ※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체류 일수가 일치하여야 함																																					
해외 체류일수 관련 특이사항 기재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서명)

보호자 : _____ (서명)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 온전한 재학, 재직, 체류 여부 산정을 위한 ‘1개 학년의 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 학개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학기 중간에 편입한 경우 : 편입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되는 일까지
- 졸업학년의 경우 : 졸업일자까지

※ 동일 시기에는 해외근무국가, 해외재학국가, 해외체류국가가 모두 일치해야 함 (해외 근무국이 중간에 변경 되었다면, 학생의 학교 소재국과 해외 체류국도 동일하게 변경됨이 원칙)

※ 해외재직기간, 해외재학기간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외 체류일 수 카운트 인정 (방학기간도 모든 기준 동일 적용)